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의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위를 조정하고
- 행정 내·외적 변화로 인해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·폐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관련 법 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신설 및 폐지 등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 순위 조정
(안 제3조, 안 제3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(주민생활지원과장 4·5급)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상향 조정
- 업무연관성이 높은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새롭고 효과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“문화체육과” 신설
- 관광과 연계한 체계적인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“관광경제과” 신설
- “문화관광과” 및 여유기구인 “스포츠사업단” 폐지

※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민원봉사과 ④자치행정과 ⑤재무과 ⑥문화체육과
⑦관광경제과 ⑧환경과 ⑨산림과 ⑩건설과 ⑪도시과 ⑫재난관리과

나. 부서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, 업무성격에 맞게 하기 위하여 부서명 변경(안 제3조, 제9조제3호)

- “지역도시과” ⇒ “도시과”
- “재난안전관리과” ⇒ “재난관리과”
- “기술개발과” ⇒ “기술지원과”

다.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신설부서에 대한 대강의 사무분장(안 제3조, 제9조)

- 분장사무에 대한 구체화 및 용어 변경
- 문화체육과, 관광경제과에 대한 사무분장
- 부서간 업무 조정
 - ▶ 교통행정업무 : 민원봉사과 ⇒ 건설과
 - ▶ 청소년업무 : 주민생활지원과 ⇒ 문화체육과
 - ▶ 하천업무 : 건설과 ⇒ 재난관리과
 - ▶ 양곡관리 업무 : 기술개발과 ⇒ 농정과

라.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(안 별표1)

-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등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: 10개소
(지소 2개소, 진료소 8개소)
- 행정구역명칭변경(도암면⇒대관령면)에 따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변경 : 3개소(지소 1개소, 진료소 2개소)

마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.
- 입법예고 : 2008.1.10~1.30(20일간), 특기할 사항 없음.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6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과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체육과·관광경제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과·도시과·재난관리과를 둔다.

②실·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

1. 기획감사실

- 가.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·조정·통제·평가
- 나.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
- 다. 미래전략 정책개발
- 라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
- 마. 예산편성 및 운용
- 바. 지방채, 기채 일시차입, 채무부담행위
- 사. 지방재정 투·융자 심사관리
- 아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
- 자.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
- 차.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
- 카.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업무

2. 주민생활지원과

- 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

- 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
- 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
- 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
- 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
- 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
- 사. 여성·아동·보육·모부자가정·출산장려에 관한 업무
- 아.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
- 3. 민원봉사과
 - 가.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
 - 나. 부동산 관련 업무
 - 다.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
 - 라.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
- 4. 자치행정과
 - 가. 조직 및 인사관리
 - 나.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
 - 다.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
 - 라. 선거 및 국민투표,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
 - 마.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, 포상에 관한 업무
 - 바. 행사·의전 관련 업무
 - 사. 보안업무 및 복무 관리
 - 아.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
 - 자.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
 - 차.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관련 업무
 - 카.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
 - 타. 통계 관련 업무
- 5. 재무과
 - 가. 지방세 부과·징수 관련 업무
 - 나.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
 - 다.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
 - 라.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
 - 마.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
- 6. 문화체육과

- 가.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
- 나.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
- 다. 도서관 관련 업무
- 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
- 마.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
- 바. 청소년 관련 업무
- 사. 레포츠 관련 업무
- 7. 관광경제과
 - 가. 관광 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
 - 나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·허가 관련 업무
 - 다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
 - 라. 에너지 관련 업무
 - 마.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
- 8. 환경과
 - 가. 환경행정 및 시설·지도·보호에 관한 업무
 - 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
 - 다.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
 - 라. 대기, 소음, 수질오염, 유역관리, 지하수에 관한 업무
 - 마. 야생 동·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, 수렵에 관한 업무
- 9. 산림과
 - 가.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
 - 나.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
 - 다.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
 - 라.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
- 10. 건설과
 - 가. 운수·교통행정에 관한 업무
 - 나. 도로·교량 관련 업무
 - 다.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
 - 라.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
 - 마.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
- 11. 도시과
 - 가.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

- 나.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
- 다.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
- 라. 경관관리 및 광고물 관련 업무
- 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
- 바.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

12. 재난관리과

- 가. 지역단위 재난·재해 관련 업무
- 나. 방재(복구지원) 관련 업무
- 다. 치수 관련 업무
- 라. 민방위 관련 업무
- 마. 안전지도 관련 업무

제3조의2를 삭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중 “법 제104조제1항”을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“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중 “지역보건법”을 “ 「지역보건법”“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”을 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”“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중 “지역보건법”을 “ 「지역보건법」으로 하고, 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”을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중 “영 제11조”를 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호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
- 나.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
- 다.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
- 라.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
- 마.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

바. 농지의 보존·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
사.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

제9조제3호 “기술개발과”를 “기술지원과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중 “법 제105조”를 “법 제114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중 “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”을 “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중 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”를 “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, “지역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③ 「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스포츠사업단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- ⑦ 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중 “기술개발과장”을 “기술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- ⑧ 「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관광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- ⑨ 「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중 “지역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,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을 “재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- ⑩ 「평창군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중 “지역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- ⑪ 「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중 “지역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- ⑫ 「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중 “지역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- ⑬ 「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2호중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을 “재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- ⑭ 「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중 “평창군농촌지도소”를 “평창군농업기술센터”로 하고, 제4조제1항중 “농촌지도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과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기재된 실·과·소의 장의 사무는 신설된 실·과·소의 장이 각각 승계하며, 치수(하천)관련 업무는 2008. 7. 1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사무로 한다.

[별표 1]

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

(제4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평창군보건의료원	평창읍 종부리 504	평창군일원
미탄보건지소	미탄면 창리 710-1	미탄면 일원
방림보건지소	방림면 방림리 1284-7	방림면 일원
대화보건지소	대화면 대화리 1172-1	대화면 일원
봉평보건지소	봉평면 창동리 333-2	봉평면 일원
용평보건지소	용평면 장평리 380	용평면 일원
진부보건지소	진부면 하진부리 166-11	진부면 일원
대관령보건지소	대관령면 황계리 335	대관령면 일원
고길보건진료소	평창읍 고길리 237-11	고길리, 노론리, 조동리, 이곡리, 지동리, 상리
다수보건진료소	평창읍 다수리 505	임하리, 뇌운리, 계장리, 하일리, 다수리, 원당리
도돈보건진료소	평창읍 도돈리 37-25	마지1,2리, 천동리, 도돈리, 응암리, 대상리, 대하리
계촌보건진료소	방림면 계촌리 2535-10	계촌1,2,3,4,5,6리, 운교1,2리
하안미보건진료소	대화면 하안미리 759-2	하안미2,3,4,5,6리
개수보건진료소	대화면 개수리 879-9	개수1,2리, 상안미 1,2리
신리보건진료소	대화면 신리 278-11	신1,2,3,4,5리
면온보건진료소	봉평면 면온리 809-2	면온1,2리, 진조리, 유포2리, 무이2리
등매보건진료소	봉평면 유포리 48-1	유포1,3리, 재산2리, 백옥포1,2리
속사보건진료소	용평면 속사리 470-5	속사1,2리, 노동리, 이목정1,2리
두일보건진료소	진부면 두일리 138-4	두일리, 척천리, 탑동리, 상진부2리
거문보건진료소	진부면 거문리 250	상월오개1,2리, 신기리, 거문리, 마평1리, 봉산리
수향보건진료소	진부면 수향리 268-3	마평2리, 화의리, 장전리, 막동리, 수향리
유천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유천리 742-3	유천1,2,3리, 병내리, 간평1리
용산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용산리 392-1	용산1,2리, 수하리, 차항1리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</u>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12조부터 제116조 및 「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<u>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주민생활지원과·문화관광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과·지역도시과·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</u></p> <p>②<u>실·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기획감사실</u></p> <p>가. <u>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</u></p> <p>나. <u>군 의회 운영관련 업무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<u>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주민생활지원과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체육과·관광경제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과·도시과·재난관리과를 둔다.</u></p> <p>②<u>실·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기획감사실</u></p> <p>가. <u>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·조정·통제·평가</u></p> <p>나. <u>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다. 법무·소송행정에 관한 업무</u> <u>라. 예산편성·운영 및 집행에 관한 업무</u> <u>마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에 관련된 업무</u> <u>바. 감사 및 회계검사와 관련된 업무</u> <u>사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</u> <u>아. 가스시설 공사 및 관련업무</u></p>	<p><u>다. 미래전략 정책개발</u> <u>라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</u> <u>감사 관련 업무</u> <u>마. 예산편성 및 운용</u> <u>바. 지방채, 기채 일시차입, 채무부담행위</u> <u>사. 지방재정 투·융자 심사관리</u> <u>아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</u> <u>자.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</u> <u>차.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</u> <u>카.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업무</u></p>
<p><u>2.민원봉사과</u> <u>가.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</u> <u>나. 부동산 관련 업무</u> <u>다. 지적 관련 업무</u> <u>라. 운수행정에 관련된 업무</u> <u>마. 보건위생에 관련된 업무</u></p>	<p><u>2. 주민생활지원과</u> <u>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</u> <u>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</u> <u>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</u> <u>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</u> <u>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</u> <u>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</u> <u>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</u> <u>한 업무</u> <u>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</u> <u>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</u> <u>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</u> <u>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</u> <u>업무</u> <u>사. 여성·아동·보육·모부자가정·출산</u> <u>장려에 관한 업무</u> <u>아.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3. 자치행정과</u></p> <p><u>가.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업무</u></p> <p><u>나.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</u></p> <p><u>다.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, 교육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라. 행사·의전 관련업무</u></p> <p><u>마. 혁신분권 관련업무</u></p> <p><u>바. 정보 통신에 관련된 업무</u></p> <p><u>사. 통계에 관련된 업무</u></p> <p><u>4. 재무과</u></p> <p><u>가. 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</u></p> <p><u>나.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다.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</u></p> <p><u>라.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</u></p>	<p><u>3. 민원봉사과</u></p> <p><u>가.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나. 부동산 관련 업무</u></p> <p><u>다.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</u></p> <p><u>라.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4. 자치행정과</u></p> <p><u>가. 조직 및 인사관리</u></p> <p><u>나.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</u></p> <p><u>다.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</u></p> <p><u>라. 선거 및 국민투표,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</u></p> <p><u>마.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, 포상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바. 행사·의전 관련 업무</u></p> <p><u>사. 보안업무 및 복무 관리</u></p> <p><u>아.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</u></p> <p><u>자.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</u></p> <p><u>차.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관련 업무</u></p> <p><u>카.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</u></p> <p><u>타. 통계 관련 업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5. 주민생활지원과</p> <p>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</p> <p>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</p> <p>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</p> <p>6. 문화관광과</p> <p>가. 문화예술에 관련된 업무</p> <p>나. 관광과 관련된 업무</p> <p>다. 도서관 관련업무</p> <p>라. 관광마케팅 관련업무</p> <p>7. 환경과</p> <p>가. 환경행정 및 시설에 관한 업무</p> <p>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대기, 소음, 수질오염,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</p>	<p>5. 재무과</p> <p>가. 지방세 부과·징수 관련 업무</p> <p>나.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</p> <p>라.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</p> <p>6. 문화체육과</p> <p>가.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</p> <p>나.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</p> <p>다. 도서관 관련 업무</p> <p>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</p> <p>바. 청소년 관련 업무</p> <p>사. 레포츠 관련 업무</p> <p>7. 관광경제과</p> <p>가. 관광 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</p> <p>나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·허가 관련 업무</p> <p>다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에너지 관련 업무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마. 야생 동·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 동물 구제 관련 업무</u></p> <p>8. 산림과 <u>가.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</u> <u>나.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</u> <u>다.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련된 업무</u> <u>라.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</u></p> <p>9. 건설과 <u>가. 치수 및 수자원개발 업무</u> <u>나. 도로·교량과 관련된 업무</u> <u>다. 농지·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</u> <u>라.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</u> <u>마.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지역도시과 <u>가.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</u> <u>나.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</u> <u>다.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</u> <u>라. 광고물·건축 관련 업무</u> <u>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</u> <u>바. 경관관리 관련 업무</u></p>	<p><u>마.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</u></p> <p>8. 환경과 <u>가. 환경행정 및 시설·지도·보호에 관한 업무</u> <u>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</u> <u>다.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u> <u>라. 대기, 소음, 수질오염, 유역관리, 지하수에 관한 업무</u> <u>마. 야생 동·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, 수렵에 관한 업무</u></p> <p>9. 산림과 <u>가.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</u> <u>나.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</u> <u>다.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</u> <u>라.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</u></p> <p>10. 건설과 <u>가. 운수·교통행정에 관한 업무</u> <u>나. 도로·교량 관련 업무</u> <u>다.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</u> <u>라.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</u> <u>마.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사.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프로젝트 관련 업무</u></p> <p><u>11. 재난안전관리과</u> <u>가. 지역단위 재난·재해 관련 업무</u> <u>나. 방재(복구지원) 관련 업무</u> <u>다. 민방위 관련 업무</u> <u>라. 안전지도 관련 업무</u></p> <p><u>제3조의2(여유기구)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스포츠사업단을 둔다.</u> <u>1. 스포츠산업 육성·발전 업무</u> <u>2. 국·내외 각종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</u> <u>3.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</u></p> <p><u>제4조(설치)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(제8조)·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·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을,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</u></p>	<p><u>11. 도시과</u> <u>가.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</u> <u>나.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</u> <u>다.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</u> <u>라. 경관관리 및 광고물 관련 업무</u> <u>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</u> <u>바.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</u></p> <p><u>12. 재난관리과</u> <u>가. 지역단위 재난·재해 관련 업무</u> <u>나. 방재(복구지원) 관련 업무</u> <u>다. 치수 관련 업무</u> <u>라. 민방위 관련 업무</u> <u>마. 안전지도 관련 업무</u></p> <p><u>제3조의2(여유기구) <삭 제></u></p> <p><u>제4조(설치)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, -----</u> <u>-----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6조(소관사무) ①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<u>지역보건법</u>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<u>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</u>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제7조(설치)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9조(소관사무)(생략)</p> <p>1. 농정과</p> <p>가. <u>농업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<u>농지의 보존·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</u></p> <p>다. <u>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생활개선사업 관련 업무</u></p> <p>마. <u>농민교육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도</u></p>	<p>② 「<u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----- -----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소관사무) ① ----- -----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「<u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----- ----- -.</p> <p>제7조(설치) ① 「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16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9조(소관사무)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농정과</p> <p>가. <u>농업정책에 관한 업무</u></p> <p>나. <u>농촌개발에 관한 업무</u></p> <p>다. <u>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</u></p> <p>라. <u>품질관리에 관한 업무</u></p> <p>마. <u>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</u></p> <p>바. <u>농지의 보존·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</u></p> <p>사. <u>서울사무소 운영 관리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축산과 가.~라.(생략)</p> <p>3. 기술개발과 가.~나.(생략) 다.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라.~마.(생략)</p>	<p>2. 축산과 가.~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술지원과 가.~나.(현행과 같음) 다. <삭제> 라.~마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설치)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(생략)</p>	<p>제11조(설치) ①법 제11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설치) ①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·면을 둔다. ②(생략)</p>	<p>제14조(설치)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·제6항----- 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설치) ①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(이하“출장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(생략)</p>	<p>제17조(설치) ①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(생략)</p>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1] 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보건지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			[별표1] 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보건지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		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	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평창군보건의료원	평창읍 중부리 504	평창군일원	평창군보건의료원	평창읍 중부리 504	평창군일원
미탄보건지소	미탄면 창리 710-1	미탄면 일원	미탄보건지소	미탄면 창리 710-1	미탄면 일원
방림보건지소	방림면 방림리 1284-7	방림면 일원	방림보건지소	방림면 방림리 1284-7	방림면 일원
대화보건지소	대화면 대화리 1171-1	대화면 일원	대화보건지소	대화면 대화리 1172-1	대화면 일원
봉평보건지소	봉평면 창동리 366-7	봉평면 일원	봉평보건지소	봉평면 창동리 333-2	봉평면 일원
용평보건지소	용평면 장평리 380	용평면 일원	용평보건지소	용평면 장평리 380	용평면 일원
진부보건지소	진부면 하진부리 166-11	진부면 일원	진부보건지소	진부면 하진부리 166-11	진부면 일원
도암보건지소	도암면 횡계리 335	도암면 일원	대관령보건지소	대관령면 횡계리 335	대관령면 일원
고길보건진료소	평창읍 고길리 237-11	고길리, 노론리, 조동리, 이곡리, 지동리, 상리	고길보건진료소	평창읍 고길리 237-11	고길리, 노론리, 조동리, 이곡리, 지동리, 상리
다수보건진료소	평창읍 다수리 335-4	임하리, 뇌운리, 계장리, 하일리, 다수리, 원당리	다수보건진료소	평창읍 다수리 505	임하리, 뇌운리, 계장리, 하일리, 다수리, 원당리
마지보건진료소	평창읍 마지리 666-1	마지1,2리, 천동리, 도동리, 응암리, 대상리, 대하리	도동보건진료소	평창읍 도동리 37-25	마지1,2리, 천동리, 도동리, 응암리, 대상리, 대하리
계촌보건진료소	방림면 계촌리 1496-3	계촌1,2,3,4,5,6리, 운교1,2리	계촌보건진료소	방림면 계촌리 2535-10	계촌1,2,3,4,5,6리, 운교1,2리
가평보건진료소	대화면 하안미리 415-4	하안미3,4,5,6리	하안미보건진료소	대화면 하안미리 759-2	하안미2,3,4,5,6리
개수보건진료소	대화면 개수리 742-5	개수1,2리, 상안미 1,2리	개수보건진료소	대화면 개수리 879-9	개수1,2리, 상안미 1,2리
신리보건진료소	대화면 신리 278-11	신1,2,3,4,5리	신리보건진료소	대화면 신리 278-11	신1,2,3,4,5리
면온보건진료소	봉평면 면온리 809-2	면온1,2리, 진조리, 유포2리, 무이2리	면온보건진료소	봉평면 면온리 809-2	면온1,2리, 진조리, 유포2리, 무이2리
등매보건진료소	봉평면 유포리 75-1	유포1,2,3리 , 재산2리, 백옥포2리	등매보건진료소	봉평면 유포리 48-1	유포1,3리 , 재산2리, 백옥포1,2리
속사보건진료소	용평면 속사리 459-19	속사1,2리, 노동리, 이목정1,2리	속사보건진료소	용평면 속사리 470-5	속사1,2리, 노동리, 이목정1,2리
두일보건진료소	진부면 두일리 138-4	두일리, 척천리, 탑동리, 상진부2리	두일보건진료소	진부면 두일리 138-4	두일리, 척천리, 탑동리, 상진부2리
거문보건진료소	진부면 거문리 246-7	상월오개1,2리, 신기리, 거문리, 마평1리, 봉산리	거문보건진료소	진부면 거문리 250	상월오개1,2리, 신기리, 거문리, 마평1리, 봉산리
수항보건진료소	진부면 수항리 268-3	마평2리, 화의리, 장전리, 막동리, 수항리	수항보건진료소	진부면 수항리 268-3	마평2리, 화의리, 장전리, 막동리, 수항리
유천보건진료소	도암면 유천리 747-1	유천1,2,3리, 병내리, 간평1리	유천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유천리 742-3	유천1,2,3리, 병내리, 간평1리
용산보건진료소	도암면 용산리 392-1	용산1,2리, 수하리	용산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용산리 392-1	용산1,2리, 수하리, 차항1리

관계법령 발취

※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※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